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18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김예지 · 박덕흠 · 김소희
서미화 · 김승수 · 우재준
최형두 · 신성범 · 김선교
서천호 · 조경태 · 박준태
안태준 · 강경숙 · 정성국
최수진 · 송석준 · 안철수
고동진 · 김미애 · 김 윤
의원(21인)

제안이유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손상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별도의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은 별도의 특수한 복지지원이 아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상호보완성을 잃게 되어 각각의 장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기존 장애인복지 및 특수교육 등의 지원방법으로는 이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

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청각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장애인 또는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고용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자립 지원, 의료 및 상담,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를 양성·훈련하여야 함(안 제18조).

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지 기능이나 행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시력과 청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나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시청각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청각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청각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시청각장애인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원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청각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일상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시청각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시청각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청각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시청각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청각장애인,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정책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의견수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9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시청각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시청각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정책, 선거 및 정치참여 관련 정보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의 개발·보급과 제3항에 따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3항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체계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나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및 보행·이동 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에 특화된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립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조단체의 구성 및 지원) ① 시청각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료 및 상담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능치료와 재활의료 및 건강검진 등의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가족이 시청각장애인을 적절히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제1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이 영화관,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인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 이동,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하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라 한다)을 양성·훈련하여야 한다.

②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교육의 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양성과 훈련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훈련의 내용 및 방법,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 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시청각장애인 또는 그 가족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청각장애인 발굴·상담 및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지원
2.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구 보급 지원
3. 시청각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및 돌봄 제공
5.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보행 등 교육 지원
6. 시청각장애인 심리상담 지원
7. 시청각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정보·교육·상담서비스 제공
8. 시청각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9.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양성·훈련 및 배치 지원

10.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1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12.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시청각장애인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에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은 시청각장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청각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시청각장애인의 국제교류 및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국제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자조단체와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 및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청각장애인(「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